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8.

발 의 자 : 이해식 · 허 영 · 한민수
박용갑 · 김원이 · 위성곤
김영환 · 조정식 · 서영교
서영석 · 윤준병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근로기준법」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. 또한,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,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「근로기준법」을 개정하는 동시에,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, 노사협력, 산업안전,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

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기준법」(의안번호 제 143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지방고용노동청,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, 노사협력, 산업안전,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중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방고용노동청,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, 노사협력, 산업안전,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
2.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근무하며 근로감독, 노사협력, 산업안전,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의 지방공무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 (생략)	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지방고용노동청,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, 노사협력, 산업안전,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</u>	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중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지방고용노동청,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, 노사협력, 산업안전,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</u>
<u><신 설></u>	2.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근무하며 근로감독, 노사

③ (생 략)	<u>협력, 산업안전, 근로여성 보 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 · 9급의 지방공무원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